

# K-컬처 · 스토리콘텐츠연구소 규정

시행: 2021. 07. 01.

## 제1조(명칭)

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K-컬처·스토리콘텐츠 연구소(Institute of K-culture and Story Content, 이하 '연구소'라 한다)라 칭한다.

## 제2조(설립목적)

본 연구소는 전통적인 인문 지식을 확장·응용해 K-컬처 및 스토리콘텐츠 제분야의 학술·창작·기획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유관 산업 분야의 발전을 견인하고 융복합적 인문 지식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3조(소재지)

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.

## 제4조(사업)

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한국문화콘텐츠학 전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기획
2. 대중문화 일반 이론과 스토리콘텐츠 방법론에 관한 연구
3. 연구 결과에 대한 반기별 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
4. 학술연구회 운영 및 월별 콜로키움 진행
5. 문화콘텐츠 관련 국가기관, 기업 등 학술연구용역 수주
6.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
7. 대중총서 시리즈 발간
8. 학술총서 시리즈 발간
9. 지역기관 및 지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 대중화 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
10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전반

## 제5조(연구소장)

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掌한다.

1. 연구소장 연구소 내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협의 연구소장 및 소속 대학(원)장의 추천으로 학무부총장이 임명한다.
2.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단,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(원)장,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# 제6조(연구팀)

① 연구소는 산하에 다음 각호와 같은 5개의 연구팀을 둘 수 있다.

1. 문학콘텐츠 연구팀
2. 영상콘텐츠 연구팀
3. 인터랙티브콘텐츠 연구팀
4. 대중문화 연구팀
5. 스토리텔링 연구팀

② 각 팀장은 연구소 구성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#### 제7조(구성원)

본 연구소는 연구소장, 상임연구원, 전문연구원, 객원 연구원, 일반연구원, 연구보조원,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. 상임연구원, 전문연구원, 객원 연구원, 일반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구분 및 운영과 인사관리는 본교 「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한다.

#### 제8조(운영위원회)

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  2. 연구소의 조직
  3. 연구소 제 규정의 개폐
  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  5. 연구소장 추천
  6. 연구원, 연구조원, 행정요원 등 임명
  7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원 중 연구소장이 위촉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9조(연구기획위원회)

① 본 연구소는 연구원의 연구기획을 위해 연구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연구기획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소장은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.

④ 연구기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10조(직무)

-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연구소 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.
- ② 각 팀장은 해당 연구팀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.
- ③ 연구원은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논문 발표 시 연구소 소속임을 명기한다.

#### 제11조(재정)

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교내연구비
2. 대외학술연구과제 수주의 수탁금
3. 보조금 및 기부금
4. 기타 수입

#### 제12조(회계)

- ①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②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은 본교 교비 예산에 포함 · 편성하고,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#### 제13조(보칙)

- ① 대학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 제 규정에 따른다.
- ② 이 연구소 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③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귀속된다.

#### 부칙

본 규정은 202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